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 ISSN 1976-0515 | Vol. 11 | No. 4 | 2011년 2월 15일

EU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강 유 덕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0-1123)

- 1. 기존 EU의 글로벌 유럽 전략의 성과
- 2. EU의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
- 3. Europe 2020의 배경과 주요 내용
- 4. EU 신통상정책(2010~15)의 주요 내용
- 5. 향후 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주 요 내 용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적인 변화에 직면한 EU는 새로운 통상정책 수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음.
- 2006년 이후 EU는 역와국과의 적극적인 FTA를 표방하는 글로벌 유럽'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한·EU FTA 서명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경제성장 약화와 관세 장벽 비중 축소, 수출의 중요성 부각, 리스본 조약 발효 등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음.
- ▶ EU는 EU권 경제가 저성장, 고실업의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자각에 따라 2010년 3월 향후 10년의 경제전략인 Europe 2020을 발표함.
- Europe 2020은 ① 스마트 성장, ② 지속가능한 성장, ③ 포용적 성장의 3대 우선목표를 수립하고, 고용과 R&D, 환경, 교육, 빈곤 부문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음.
- Europe 2020에 따라 주제별 하부전략과 국가별 전략(정 책검토 및 권고)이 마련될 예정임.
- ▶ 2010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Europe 2020에 따른 신통 상전략을 담은 신통상정책안(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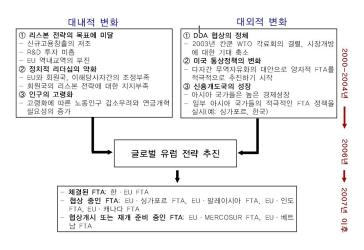
- 2010~15년의 신통상정책안은 ① 적극적인 FTA 추진, ② 비관세장벽 철폐, ③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 ④ 공동투자정책 수립, ⑤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의 강화를 골자로 함.
- 신통상정책은 규범, 지재권, 정부조달시장 등의 부문에서 대중국 통상정책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 향후 EU의 통상정책은 FTA의 외연을 확대하고 규범 차이로 인해 존재하는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EU는 현재의 적극적인 FTA 정책을 유지하면서 교역상대 국에 따른 차별화된 FTA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됨.
- EU는 역내에서 적용되는 규범을 교역상대국에 강요하는 '규범수출' 정책을 통해 EU 기업들에 유리한 사업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한·EU FTA 발효 이후 EU 측의 지재권 보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원산지규정 준수 감독 등이 강화될 것으 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1. 기존 EU의 글로벌 유럽 전략의 성과

가. 글로벌 유럽 전략의 대내외적 배경

- 2006년 이후 EU는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음.1)
- '글로벌 유럽' 전략의 추진배경으로 대내외 통상환경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는바, 대내적 원인으로는 ① 기존 리스본 전략의 목표달성 미흡,²⁾ ② EU 내 정치적 리더십 약화, ③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등 EU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던 점을 들 수 있음.
- 대외적 원인으로는 ① DDA 협상의 정체, ② 미국 등 경쟁 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 ③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높은 성 장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1. 글로벌 유럽 전략의 대내외적 배경과 결과



자료: 필자 작성.

- COM(2006),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567 final.
- 2)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또는 Agenda)
 - ►EU 회원국들은 2010년까지 EU를 지식경제에 기반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성 있는 경제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2000년 3월 경제개혁과 고용증대, 사회통합을 시행하기 위한 '리스본 전략(Lisbon Agenda)'을 수립한 바 있음.
 - ▶ 그러나 2004년 중간점검 결과는 리스본 전략의 목표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U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수정 리스본 전략'을 발표했음.
 - ▶ 기존 리스본 전략이 EU의 역내 단일시장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 었다면, 수정 리스본 전략은 단일시장의 완성 이외에도 대외교역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이 큰 특징임.
 - ▶글로벌 유럽 전략은 수정 리스본 전략의 통상부문 하부전략으로 볼 수 있음.

- '글로벌 유럽' 전략은 상품교역은 물론, 서비스와 투자 부문의 자유화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지향하며, 원거리국가와 협상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EU의 기존 FTA 정책과는 명확하게 구분됨.
- '글로벌 유럽' 전략하에서 FTA 상대국 선정은 ① 시장잠재 력(경제규모와 경제성장률), ② EU의 수출에 대한 보호수 준, ③ EU의 경쟁국가와의 FTA 추진여부 등 경제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
- 위의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EU는 한국과 아세안, 남미공 동시장(MERCOSUR), 인도 등을 우선 FTA 협상국으로 선정 한 바 있음.

표 1. '글로벌 유럽'전략하에 시행된 EU의 FTA 협상

무역협정	경과	협상추이
한·EU FTA	▶ 2007년 5월 협상개시 ▶ 2010년 10월 협정문 서명완료	양측의 의회비준 대기
EU · ASEAN FTA	 ▶ 2007년 5월 FTA 추진에 합의 ▶ 2009년 3월 이후 EU와 ASEAN 개별회원국 간의 협상으로 변경 	협상중지
	▶ 싱가포르: 2010년 3월 협상시작, 2011년 중 협상완료 계획	2010년 9월 3차 협상완료
	▶ 말레이시아: 2010년 10월 협상시작	2010년 12월 1차 협상 완료
	▶ 베트남: 2010년 3월 협상개시에 합의	협상개시 준비 중
EU · 인도 FTA	▶ 2007년 6월 협상개시▶ 2011년 상반기에 협상완료 목표	9차 협상 완료
EU·캐나다 FTA	▶ 2009년 5월 협상개시 ▶ 2년 6개월의 협상기간 예상	2010년 10월 5차 협상 완료
EU·MERCOS UR FTA	▶ 1999년 협상 시작 후 2004년 협상 중단	2010년 5월 협상재개

자료: European Commission(www.bilaterals.org)에 기초하여 작성.

나. 글로벌 유럽 전략의 중간평가

- EU의 기존 무역협정은 미국의 FTA에 비해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개방수준이 낮고 협상국에 따라 협정의 내용이 상이한 것이 특징이었으나 '글로벌 유럽' 전략에서는 일괄적으로 포괄적 FTA를 추구하고 있음.
- EU가 지중해연안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체결한 무역협정 (Euro-Med)은 시장개방이 공산품에 한정되었으며, 아프리

카, 카리브해, 태평양 도서국가(ACP)와 체결한 경제동반자 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EU 측의 일방적 관세혜택 부여와 재정지원책 등으로 구성되었음.

- EU 가입의 대상이 되는 인근국가와의 무역협정은 EU의 법체계(acquis communautaire) 수용을 명시하는 수준 높은 FTA를 고수해왔던 데 반해, EU·칠레 FTA(2004년 발효)에서 EU는 농업부문 등 특정부문을 제외한 바 있음.
- 그러나 '글로벌 유럽'에 의해 추진된 첫 번째 FTA인한 · EU FTA부터는 상품시장 개방 외에 국내외 규범 이슈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FTA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점차 미국형 FTA(NAFTA형 FTA)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대표적으로 높은 관세철폐율(98.7%)을 비롯하여 지적재산 권(IPR)과 정부조달, 경쟁정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부문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임.
- 현재 EU는 WTO 회원국 중 대부분의 국가와 특혜협정³⁾을 체결한 상태이며 특혜무역을 통한 교역은 EU 총대외수입의 44%(2009)를 차지함.
- EU가 PTA를 체결하지 않아 WTO의 '최혜국 대우(MFN) 원 칙'을 전적으로 적용하는 교역상대국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 하여 중국, 캐나다,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0여 개국에 불과한 실정(한국은 2011, 7, 잠정발효 예정)

2. EU의 대내외 통상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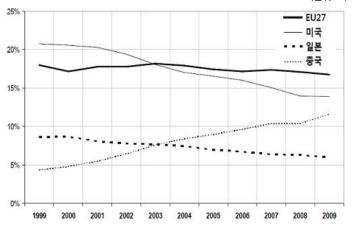
가. 대외적 변화

- EU 경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EU의 대외교역 또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은 점차 감소하여 왔음.
-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의 대외 상품교역 규모는 다른 국가의 교역규모를 상회하고 있으나,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짐.

-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4~2007년 기간 동안 EU는 여전히 고부가가치 부문의 교역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기간 중국의 성장이 매우 비약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주요국의 상품교역 점유율





자료: WTO, 유럽통계청.

표 2. 고기술 제품 부문의 시장점유율

(단위: %)

				(11.70)
	고부가 가치분야 점유율	1994~ 2007년의 변화	고기술 부문 점유율	1994~ 2007년의 변화
EU25	28.8	0.8	16.9	0.8
EU15	27.5	-0.2	15.7	0.0
중 · 동유럽	1.3	1.0	1.2	0.8
미국	13.5	-6.0	13.7	-11.2
일본	9.8	-9.8	8.0	-12.7
중국	7.6	5.9	21.2	17.8
인도	1.0	0.5	0.6	0.4
러시아	0.9	0.6	0.4	0.1
브라질	0.9	0.1	0.6	0.3

 주: 중·동유럽은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몰타, 키프로스를 제외한 10개국을 뜻함

자료: CEPII(2010), European export performance.

- EU의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15년에는 세계 경제성장의 90%가 유럽 외 지역에서 이루어질 전망임,
- FTA 확산으로 무역장벽 중 관세장벽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 지고 있어,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글로벌 유럽' 전략에 의거하여 진행 중인 EU의 FTA가 모두 발효될 경우 EU 대외교역의 절반이 FTA를 통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EU가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 경제국 가와 FTA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FTA 체

³⁾ 본고에서 '특혜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하여 '최혜국 대우(MFN) 원칙'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모든 종류의 무역협정을 총칭함. 따라서 상호적, 계약적 차원의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뿐만 아니라 EU가 일방적 (unilateral)으로 제공하는 관세혜택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나 비계약적 (non-contracting)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까지 포함함.

결국가와의 교역이 EU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 우 높은 것임 또한 PTA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잠재교역 량이 대부분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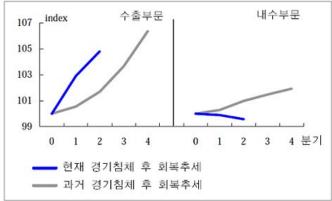
-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가 모두 발효될 경우 교역상대 국의 대EU 평균관세는 1.7%에 불과할 전망이며. EU의 평 균 수입관세 또한 1.3%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관세장벽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 될 것임.
- 따라서 무역협상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국내외 규범, 지적재 산권, 투자정책, 정부조달시장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옮겨가고 있음.
- DDA는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낮으나 EU를 비롯 한 대부분 국가의 통상목표로 남아 있음.
- DDA는 WTO가 세계교역의 기본질서라는 점, 다자간 협상 이라는 상징성과 협상의 포괄성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음.
- 2003년 WTO 칸쿤각료회의 결렬 이후 DDA 협상에서 투자, 정부조달. 경쟁 부문이 제외되었으며. 이는 EU가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선회하게 된 계기가 된 바 있음.
- EU 입장에서는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DDA의 타결을 위한 돌파구와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통상규범 제정자(rule setter)로서의 위상 유지를 위해 DDA 이후의 장기적인 통 상전략 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나. 대내적 변화

- 2008~09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대외수출이 갖는 중요성이 매우 커졌음.
- 2008~09년의 유례없는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EU 회원국들 은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 민간소비를 비롯한 내수 부진으로 인해 생산감소와 고실업을 겪었으며, 수출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였음.
-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의 경우 경기회복 과정에서 수출이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다른 경기침체 시기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음.
- 경기회복은 독일 등 대외수출이 많은 국가에서 시작되어 주 변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독일의 수출이 5% 증가할 경우 EU 역내교역 활성화를 통해 EU 회원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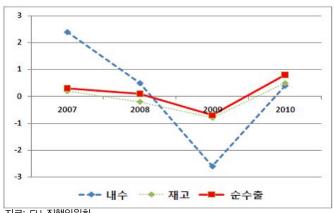
GDP가 0.6~0.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4)

그림 3. 유로지역의 경기침체 이후 회복추세



주: 과거 경기침체는 1970,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의 경기침체를 의미함. 자료: EU 집행위원회.

그림 4. 유로지역의 항목별 경제성장률 기여도



자료: EU 집행위원회.

-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EU 통상정책의 범위 와 결정절차, 기관간 권한이 변화됨.
- 리스본 조약에 의해 통상정책 중 투자부문이 집행위의 배타 적 권한에 포함되면서 회원국이 체결한 기존의 양자투자협 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과 앞으로 추진될 FTA와의 통합 또는 양립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생겼음.
- 리스본 조약하에서는 EU와 회원국 간의 권한 영역을 명확 하게 구분하여 ① 회원국 고유권한, ② EU의 배타적 권한, ③ EU와 회원국 간의 공동권한으로 구분하였으며, EU의 배타적 권한 영역이 확대되었음. 대표적인 영역이 공동 통 상정책임.

⁴⁾ EU 내 경제비중이 높은 독일(20%)의 수출이 5% 증가할 경우 다음 과 같은 효과를 유발함. 독일의 수출증가(+5%↑) → 독일 내수증가 (+1%↑) → 독일의 생산증가(+1.8%↑) → 독일의 수입증가(+2.7% ↑) → EU 회원국 수출증가(유로지역: +1.2%↑ 비유로지역: +1.1% ↑) → EU 회원국 내수(+0.3~0.4%↑)와 GDP(+0.6~0.7%↑) 증가. EU 집행위원회 QUEST III 모델을 통한 추정

- 리스본 조약하에서는 EU의 배타적 영역이 상품무역협상(관 세협상) 외에도 서비스와 투자,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산 권(TRIPS)으로까지 확대되어 향후 FTA를 비롯한 무역협상 에 변화가 있을 전망임.
- 또한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통상정책 내 이해관계 자들의 역학관계가 바뀌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임.
- 한 · EU FTA(2007. 5 협상시작)는 과거 니스조약 체제 (2002~09년)에서 협상이 진행된 EU의 마지막 FTA 협상 인 셈이며, 서명 후(2010. 10) 발효까지의 과정에는 리스 본 조약이 적용되므로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Europe 2020의 배경과 주요 내용

가. Europe 2020의 배경

- 최근 경제금융 위기로 인해 지난 10년간의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성과가 사라졌으며, 재정건전성도 지난 2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저하되었음.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EU 경제는 4%의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했으며, 산업생산은 1990년대 수준으로 후퇴하였음.
- EU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다른 경제권의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며, 그 요인으로는 R&D 투자의 부진, 뒤처진 정보산업 화, 산업구조의 경직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 2000~1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EU(1.2%), 미국 (1.8%), 아시아(4.2%)
- 완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EU 내 고용률은 69%에 불과하여 다른 경제권의 고용률을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및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상황으로 실업자 수는 2,300만 명(EU 총노동인구의 10%)을 기록.
 - ※ EU의 여성고용률: 63%, 남성고용률: 76%EU의 고령자고용률: 46%, 미국: 62%, 일본: 66%
- 2007년부터는 고령자(6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이 두 배정도 빨라져 그 결과 EU의 노동인구는 2013/14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외부적으로는 주요 교역국과의 경쟁,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 확보 등의 도전에 직면함.
- 향후 EU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EU 차원의 통합적인 경제발전전략이 필요함.

 EU 경제가 저성장의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우수한 노동력과 산업기반, 단일시장과 단일통화, 경쟁력 있는 서비 스 산업 등을 갖추고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저성장, 고실업, 인구고령화 등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음.

나. Europe 2020의 주요 내용

- EU 집행위원화는 2010년 3월 3일 새로운 경제전략인 Europe 2020' 전략을 발표함.5)
- 'Europe 2020' 은 ① 스마트(smart) 성장, ②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성장, ③ 포용적(inclusive) 성장의 3대 우선 목표를 설정함.

표 3. Europe 2020의 3대 우선목표

①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 ▶기술혁신: 미래기술 분야의 R&D 활동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유럽연구지대(ERA)의 완성, 혁신을 위한 환경개선(예: 공동특허 권 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조치 강화, 금융지원 강화 (구조기금, 유럽개발은행의 지원), 공동기준제도의 심화
- GDP 대비 R&D(2006): EU(1.9%). 미국(2.7%), 일본(3.4%)
- ▶교육, 훈련 및 평생교육 강화: 교육제도의 성과개선, 고등교육기 관의 국제경쟁력 강화, 청년층 근로자의 역내이동 촉진, 청년고 용 촉진
- 대학교육 이수율(25~34세, 2007): EU(29.9%). 미국(40.4%), 일본 (53.7%)
- ▶ 디지털 사회화: 2013년까지 전 유럽인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망 확충, 온라인 콘텐츠 및 서비스 시장의 역내단일화
- 전세계 정보통신 시장규모는 2조억 유로 규모, 유럽기업의 비중
 은 1/4로 추산

② 지속적 성장(Sustainable Growth)

- ▶ 경쟁력: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개선, 지속가능한 강력한 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환경조성, 정부조달, 경쟁 및 규제정책 등 을 포괄하는 산업정책 마련, 미래형 산업으로 구조조정 촉진
- ▶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신기술을 활용한 탄소배출의 감소(탄소권거래제 등 시장메커니즘의 활용), 에너지 절감기술의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녹생성장 촉진, 운송부문의 현대화, 범유럽에너지망(TEEN)의 확대·개편
- 2020년까지 EU의 에너지감축 목표가 달성될 경우 석유, 가스수입이 600억 유로 감소
- 역내 에너지시장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EU GDP의 0.6~0.8%
 에 이르는 플러스 효과가 예상
- EU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③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 ▶고용: 신기술교육의 강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참여율을 제고, 역내노동이동성의 강화를 통한 노동력 수급의 원활화(유럽 사회기금의 활용),사회 대화의 촉진
- 고령자 노동참가율(50-64세, 2009): EU(46%). 미국(62%), 일 본(66%)
- ▶ 빈곤퇴치: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효과의 전방위적 확산을 통해 소 외계층의 이익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훈련, 고용기회 확대

자료: EU 집행위원회. COM(2010)2020에서 정리.

⁵⁾ Europe 2020: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COM(2010)2020.

■ [표 3]에 제시된 목표의 달성여부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 도록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5대 목표 (headline targets)를 설정하였으며 각 회원국이 자국의 상황 을 고려한 자체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였음.

■ 「Europe 2020」의 5대 목표

- ① 생산가능인구(20~64세)의 노동참가율을 현재 69%에서 최 소 75%까지 제고
- ② R&D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R&D 투자를 GDP 대비 현행 1.9%에서 3%까지 증대⁶⁾
- ③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 감축하고 역외주요국이 협조 할 경우 30%까지 감축하며,⁷⁾ 총에너지 소비의 20%를 신재 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
- ④ 조기학업 중단자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10%로 낮추며 30~34세의 대학졸업 비중을 현재의 31%에서 최소 40%까지 증대
- ⑤ 빈곤층을 25% 줄여 빈곤인구를 2,000만 명 감소8)
- Europe 2020은 6월 17일 유럽이사회(정상회의)에서 승인됨으로써 EU의 중장기 경제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임. 특히 주제별 하부전략(예: 통상전략, 에너지전략, 노동전략)과 국가별전략(정책검토 및 권고)을 통해 세부적 내용을 갖출 예정임.
- 'Europe 2020' 전략은 EU 내부의 성장전략 외에도 대외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5년 수정 리스본전략과 같은 맥락에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다자간 무역협상을 비롯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함.
- 환경산업과 고기술 산업 부문에서 경쟁력 유지와 녹색산업 부문에서 국제적 기준을 선도함으로써 개방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6) R&D 투자(GDP 대비 %, 2007)는 스웨덴(3.60), 핀란드(3.47), 오스트리아(2.56), 덴마크(2.55), 독일(2.54) 등에서 높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1%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참고로미국과 일본의 R%D 투자는 GDP 대비 각각 2.67%와 3.40%임.
- 7) 2009년 12월 유럽이사회는 2012년 이후(포스트 교토체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배출량 30% 감축을 결정한 바 있음(기존 목표는 20%). 그러나 이 목표는 주요 선진 국이 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감축목표를 추진하고 개도국이 적 절한(adequately) 감축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결정된 것임.
- 8) 현재 EU 내 빈곤율(at-risk-of poverty rate)은 2008년 17% 수준으로 빈곤층 인구는 8,000만 명에 달함(빈곤율은 각 회원국 에서 가처분소득이 평균의 60% 미만인 인구비중을 뜻함).

- 거대교역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통해 시장접근성, 규범, 글로벌 불균형, 에너지 및 기후변화, 개발 등의 이슈를 다루고자 함.

4. EU 신통상정책(2010~15) 주요 내용

- 2010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Europe 2020에 따른 통상정 책안인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를 발표함.
- 통상정책인⁶⁾은 최근의 경제, 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0~15년 기간 동안 EU 대외통상정책의 주요 목표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DDA 협상의 지속과 적극적인 FTA의 추진

- 2010년의 협상종료 시한을 넘긴 DDA는 돌파구 마련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나 세계교역질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호무역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EU 통상정책의 우선과제로 남아 있음.
- 글로벌 유럽 전략에 의거, 추진 중인 역외 교역국과의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서명이 이루어진 한·EU FTA를 비롯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상 ASEAN 회원국), 인도, 캐나다, MERCOSUR와 FTA 협상이 이루어 지고 있음.
- 또한 동유럽의 근린국과 지중해 국가들과의 기존 무역협정을 대신할 새로운 협정이 준비 중임.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거대교역국과는 포괄적 FTA 가 아닌 규제 등 비관세장벽 철폐 위주의 협상을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출 계획임.
- 미국: 범대서양경제회의(TEC: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중국: 고위급경제무역대회(High level Economic and Trade Dialogue), 일본: 고위그룹(High Level Group), 러시아: 현재의 EU·러시아 동반자협력협정을 대신할 새로운 양자 협정 마련.
- 대중국 통상정책의 경우 기준과 규제, 서비스, 투자, 정부조 달을 비롯한 지재권 보호조치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⁹⁾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 Trade Policy as a Core Component of the EU's 2020 Strategy, COM(2010)612.

예정이며, 수입대체, 외국기술 이전의 강요, 원자재수출제한 등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도 포함될 예정임.

나. 규제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규제 수렴·협력의 추구

- FTA 등을 통해 관세장벽이 상당 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비관 세장벽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함.
- 무역상대국이 국제기준을 인정하지 않거나 특정검사, 인증 제도를 강요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무역장벽이 된다는 점에서 통상협상에서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을 예정임.
- 동등규제의 인정 또는 규제적 수렴을 통해 규제장벽을 줄일 경우 무역증진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EU 단일시장의 완성과정에서 상당부분 입증된 바 있음.¹⁰⁾
-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야별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을 훨씬 상회하는데, 미국의 대EU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50% 감소할 경우 EU 총 GDP가 0.5%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Ecorys 2009).

표 4. EU와 미국, 일본의 비관세 장벽

(단위: 관세상당치, %)

품목	EU의 비관세 장벽	미국의 비관세 장벽	품목	일본의 비관세장벽
화학	23.9	21.0	식품, 음료	25.0
제약	15.3	9.5	화학, 제약	22.0
화장품	34.6	32.4	전기기계	11.6
전자	6.5	6.5	차량	10.0
사무,통신 장비	19.1	22.9	운송장비	45.0
자동차	25.5	26.8	금속 및 금속 제품	21.3
항공	18.8	19.1	목재, 종이제품	15.4
음식,음료	56.8	73.3	기타 기계	30.0
금속	11.9	17.0	개인,문화, 기타서비스	6.5
섬유,의류	19.2	16.7		
목제, 종 이제품	11.3	7.7		

자료: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대EU 수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뜻함. 자료: Ecorys(2009), Non-Tariff Measures in EU-US Trade and Investment-Economic Analysis/Copenhagen Economics(2010), Th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EU and Japan.

다. 선진국 및 신흥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EU 기업들의 접근성 개선

- 현재 정부조달 부문은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의거하여 시장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으나, GPA 조약국은 14개국에 불과하며, 개방부분도 일부에 불과한 상황임.
- GPA 협정국에 개방된 정부조달부문은 EU가 15%, 한국이 14%이나 캐나다는 4%, 미국과 일본은 각각 3.2%와 1.0%에 불과한 실정임.
- 통상정책안에서는 정부조달 부문의 개방을 위해 ①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GPA 가입을 촉구, ② FTA에 정부조달 부문을 포함시킬 것, ③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조달 시장에 유럽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법안 마련 등을 밝히고 있음.
- 이러한 조치들은 2011년 상반기에 마련될 것이며, 해당 국 가들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EU 측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호수단이 마련 될 것임.

라. 새로운 해외투자정책의 수립

-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투자부문은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으로 공동정책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동투자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EU 회원국들은 1959년 이후 1,200여 개의 양자투자협정 (BIT)을 체결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동투자정책을 통해 이를 대체해 나가야 하는 상황임.
- 집행위는 ①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캐나다, 인도, 싱가포르, MERCOSUR)에 투자부문을 포함시키고, ② 중국, 러시아등과는 현재와 같은 BT를 유지하고, ③ 그 외 분야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7월 EU의 공동투자규정 입안을 위한 방향¹¹⁾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공동투자규정과 개별 BIT의 과도기적인 양립을 규정하는 법안(regulation)¹²⁾

¹⁰⁾ 동등규제(equivalent)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은 자국 의 특정규제에 대해 교역상대국도 동등한 목적과 효력을 갖는 규제가 있는 경우, 이를 국내규제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함. 이는 EU 기능조약 34조에 근거하며 1979년 EU 법원의 판례인 '디종의 카시스(Cassis de Dijon)'이후 EU 역내의 규제수렴을 위한 주요원칙이 됨.

Communication, Towards a comprehensive Europea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y, COM(2010)343 final.

¹²⁾ Proposal for a Regulation establishing transitional arrangements for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between Member States and third countries, COM(2010)344 f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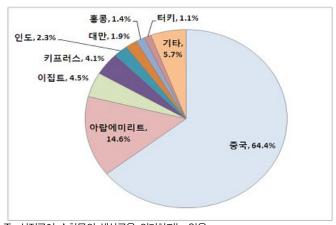
을 심의 중임. 공동투자정책은 시장접근(서비스 mode 3)과 투자보호조치를 동시에 포함할 예정임.

- 리스본 조약 발효 이전에 협상이 이루어진 한 · EU FTA의 투자 chapter는 법인 설립(establishment)을 통한 시장접 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 · EU 간의 투자보호는 우리나라와 EU 개별회원국 간의 BIT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EU 차원의 투자협정에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Investor—to—State dispute settlement) 등 투자보호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 현재 우리나라는 27개 EU 회원국 중 22개국과 BIT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BIT는 ISD를 포함 하고 있음.

마. 제3국에서의 EU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및 EU 국 경에서의 지재권 감독강화

- 집행위는 EU 내와 제3국 시장에서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계획 중임.
- 지재권 보호수준의 강화는 ① EU 국경에서 지재권 집행에 관한 관세규정을 재검토하고, ② EU 내 회원국간 지재권 집 행규정의 통일성을 개선하고, ③ FTA에 지재권 관련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예정임.
-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 지재권에 대한 위반이 가장 크게 적발되는 곳은 중국(전체의 2/3)으로 집행위는 중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조치를 크게 강화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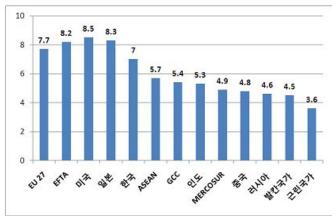
그림 5. EU에서 지재권 위반조치로 적발된 수회물의 선적국별 비중



주: 선적국이 수화물의 생산국을 의미하지는 않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9), Report on EU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그림 6. 주요국의 지재권 보호지수



주: 보호지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최하점: 0, 최고점: 10). 자료: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2010.

바. 수출규제조치(export control measure) 개혁

- 통상정책은 외교정책의 일부로서 교역국의 정치적 안정과 인권, 노동조건, 환경정책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인정책이 될수 있음. 대표적인 예로 GPS와 이중용도품목(dual-use goods)에 대한 수출규제를 들 수 있음.
- 이중용도품목⁽³⁾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는 외교안보정책의 일 환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EU 차원의 수출규제조치에도 불 구, 회원국별 집행정도에 차이가 있어 공동통상정책의 효율 성 문제가 지적되어 온 바 있음.
- 이에 대한 개혁을 통해 EU 수출업자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간소하고 투명하게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¹⁴⁾

5. 향후 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우리나라 의 대응

가. 향후 EU 통상정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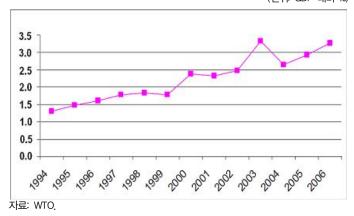
■ EU는 기존의 글로벌 유럽 전략에 따른 FTA 정책을 유지하되 차별화된 FTA 정책을 통해 FTA의 외연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됨.

- 13) 이중용도품목(dual-use goods)은 민간용과 군수용으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등 원자력 관련 품목과 중장비기계, 무기류 등을 뜻함.
- 14) 집행위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녹서(Green Paper)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볼때, 본격적인 개혁조치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일반적으로 EU 집행위원회의 정책제안은 녹서(Green Paper) 발간 → 공공·민간자문 → 백서(White Paper) 발간 → EU 기관별 검토 → 공식법안 제안 등의 순서로 이루어짐.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성장동력으로서 수출의 역할이 한층 제고됨에 따라 EU는 향후 FTA를 통한 수출기회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임.
- '글로벌 유럽' 전략의 연장선에서 원칙적으로는 포괄적 FTA를 지향하나, 교역상대국들의 개발수준 편차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FTA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¹⁵⁾
- EU가 한·EU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FTA 협상을 추진할 경우 EU와 ASEAN 회원국 간의 FTA 협상진전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
- 지재권 보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관련하여 서비스와 투자 부문의 개방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EU의 공동투자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투자진출을 위한 시장개방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진출전략이 수립될 전망임.
- EU의 정부조달시장은 개방정도가 증가하여 왔으며(그림 7 참고) 시장규모가 커서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EU의 개 방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의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2조 유로를 상회하며 총 정부조달시장 중 15%를 개방하고 있어 각각 3.2%와 4%의 개방에 그치고 있는 미국과 일본보다 개방 폭이 큼.

그림 7. EU의 GPA 양허변화

(단위: GDP 대비 %)



^{15) &}quot;FTA 협상은 교역관계의 질과 깊이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통상담당 집행위원 Gucht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연설, 2010. 6. 22),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는 한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체결하는 FTA와는 차별화되어야 함"(통상담당 집행 위원 Civil Society 연설, 2010. 3. 24).

표 5. 주요국의 정부조달(PP: Public procurement) 시장 접근성 비교

	EU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총 PP 시장 규모	2,088	1,077	565	225	106
GDP 대비 %	16%	11%	18%	22%	14%
GPA 양허 PP 규모	370	279	96	59	25
GDP 대비 %	3%	3%	3%	3%	3%
GPA 제외규모	58	245	74	57	10
GDP 대비 %	0.5%	2,5%	2,5%	5,5%	1,0%
GPA 양허규모	312	34	22	2	15
GDP 대비 %	2.5%	0,5%	0.5%	0,5%	2.0%
총 PP 중 %	15%	3,2%	4%	1%	14%
GPA 양허 중 %	84%	12%	23%	3%	60%

주: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정). 자료: EU 집행위원회, DG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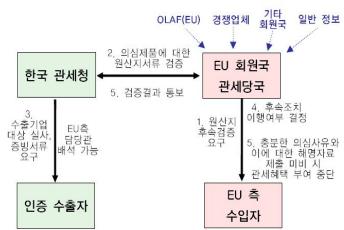
- EU는 글로벌 규범 제정자(rule setter)로서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어 교역국에 대한 규제압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EU 역내에서 적용되는 규범을 교역상대국에 강요하는 이른 바 '규범수출' 정책을 통해 EU 기업들에 유리한 사업여건 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정책기조는 FTA와 같은 통상정책을 비롯하여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것임.
- 특히 친환경 분야에서의 규범·표준과 기술선점을 통해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한편 교역국에 대해 이 부문의 시장 개방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재 권, 정부조달시장, 산업정책 등에서 중국과 미묘한 통상갈등 이 예상됨.
- 신통상정책에서는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에 가장 많은 부문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지재권 위반문제, 중국의 GPA 가입촉구, 무역 저해적인 산업정책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음.
- EU 통상정책의 주요 방향과 대중국 교역적자, 중국의 성장 잠재력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잠재 적인 통상마찰과 협력관계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유럽의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취약국가의 국채매입에 적극 나설 것을 수차례 밝혀왔음.

나.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 한·EU FTA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EU 시장에 대한 접근 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EU의 지재권 보호요구와 규제압 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 한·EU FTA를 통해 EU의 공공·민간 조달시장에 대한 접 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EU 회원국별 상황에 맞 는 니즈(needs) 파악을 통해 진출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지재권 보호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선도 적 조치를 통해 주요국과의 통상분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친환경 부문의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글로벌 규제 동향을 국내법에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EU의 규제정책과 무역보호조치가 해당 산업계의 폭넓은 자 문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산업계도 규제동향을 미리 파악하는 한편, 관련 산업계를 통한 영향력 행사방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EU 산업계의 동향파악을 위해 현지 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EU 산업단체 멤버십 획득 등을 통해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한·EU FTA 발효 시 대중국 부품의존도가 높은 우리 상품의 원산지규정 준수가 필요함.
- EU 산업계는 중국의 무역관행과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한·EU FTA 협 상 중 원산지 규정을 둘러싸고 표출되었음.
- EU 산업계는 한국산 제품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FTA의 수혜가 실질적으로 중국 측에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 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EU 측은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요구 한 바 있음.
- 한·EU FTA 발효로 처음 도입되는 수출자 원산지 인증제 도의 경우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통해 우회 수출될 수 있 다는 우려에 따라 EU 측의 비공식적 검증절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원산지 위반 사례로 지목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 비용을 비롯하여 국내외 당국의 제재조치, EU 측 수입업자 의 소송 제기 등에 직면할 수 있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은 품목의 경우 원산지규정 준수를 위한 기술적 노력과 더불어 EU 측의 후속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준비가 필요함.
- ① FTA 특혜관세 혜택이 큰 품목, ② FTA 발효시기를 전후하여 수출물량이 급증하는 품목, ③ 원산지 결정기준이상대적으로 복잡한 품목, ④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거나 중국으로부터 우회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
 - ※ EU는 매년 전체 수입건의 0.5% 정도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연간 3,000건 이상의 원산지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8. 한·EU FTA 적용 시 원산지 후속검증 절차



주: OLAF(European Anti-Fraud Office): EU 집행위원회 신하의 부정부패 감독기관 자료: Allen & Overy,

-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EU의 압력이 한층 강화될 전 망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함.
- 한 · EU FTA는 EU가 제3국과 부문별 비관세장벽 철폐와 규제협의를 명시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향후 EU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요구가 강해질 전망임.
- 한 · EU FTA는 가전제품, 자동차, 제약 및 의료장비, 화학 부문에서 규제와 기준의 차이에 의한 무역저해 효과를 최소 화하고자 상호인정과 향후 실무그룹을 통한 규제협력을 규 정하고 있음.

표 6. 한·EU FTA를 통한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사례

가전제품	 ▶ 적합성 평가절차 - 한국은 전자파적합성(EMC)과 전가안전 부문에 대해 단계(3년)적으로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을 적용 - 148개 품목군 중 53개의 품목군(주로 전기모터 사용)은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에서 제외 - 제외품목 중 협정발효 5년 이내에 일부 품목에서 SDoC 도입, 이후 5년마다 EU와 협의하여 제외부 문 축소
자동차	 ▶ 안전기준 UN유럽경제위원회(UN ECE)와 세계기술규정(GTR)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 국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배출기준 국내 수입 EU 차량은 국내배출가스기준 준수(1만 대 이하는 완화적용)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nostics) 기준은 Euro 6 OBD 기준을 국내기 준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 - 당사자 국내 기준 중 상응한 UN ECE 또는 GTR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국내 기준을 해당기준과 조화하도록 의무화

- EU와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규제, 기준의 차이에 따른 비관세장벽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여,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한 EU의 요구가 강해질 전망임.
- EU 내 다양한 상품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며, 일부 표준, 인증 사항은 회원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EU의 비관세장벽은 표준, 환경, 안전 관련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산업 분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표 7. EU의 대표적인 산업규제(비관세장벽)

산업부문	산업 규제	
전기 · 전자	 ▶ 전자파 관리제도(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지침(Directive 89/336/EEC) ▶ 유해물질 관리제도(RoHS, Directive 2002/95/EC) ▶ 폐가전 처리 지침(WEEE, Directive 2002/96/EC) ▶ 에코 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 Dir. 2005/32/EC) 	
자동차	 ▶ Euro 5: 디젤차의 분진과 질산배출 한도량 규제 ▶ 자동차 CO2 배기량규제(Regulation 443/2009/EC) 	
화하	 ▶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제(Directive 94/62/EC) ▶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증 및 제한 (REACH, Regulation 1907/2006/EC) 	

자료: 필자 정리.

 EU 통합규제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별 수입규제나 표준시험, 인증절차가 상이한 경우가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제를 적용,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요 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KIEP